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0. 백중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상정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중헌 의원)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¹⁾는 허가신청서에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1) 「의료법 시행규칙」

설명서 사본과 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하에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전에 부지매입, 건축허가 등 사전 절차가 진행된 경우 시·도지사가 병상수급관리 계획 등을 이유로 불허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심의사항이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전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전 심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 심의에서 이루어질 대강의 심의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